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28일, 이헌승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국회(임사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2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2회국회(임사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2.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헌승 의원)

현행법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및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 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은도서관은 생활 친화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문화 시설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시·군·구가 운영실태조사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업무의 경우 「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동일하게 국립, 공립 및 사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시·군·구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현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36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이현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의 경우 국립·공립·사립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등록의 책임 주체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미시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간에서 운영하므로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나,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군·구에서 등록을 심의·관리할 경우 등록 신청기관과 심의기관이 동일해지므로, 현행대로 광역 시·도에서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임오경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